「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자료 제공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분리 · 수거하면 재활용이 용이하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내용

이번 개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1.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별표2 제5호란) 중 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사용억제란을 삭제한다.

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단서조항(별표 2 비고 1의2)을 삭제한다.

3.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별표 2 비고 제7호의 다목)을 삭제한다.

1. 제1호 가목의 경우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혼례 · 회갑연 · 상례에 참석한 조 ·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1의2. 삭제

업종별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제4조 관련)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컵 ·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 · 합성수지접시 ·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 합성수지용기 ·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나. 제작 · 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이상)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 치약 ○1회용 샴푸 · 린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 쇼핑백
	나.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 · 소매업(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 쇼핑백
	나.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 비고

1. 제1호 가목의 경우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혼례 · 회갑연 · 상례에 참석한 조 ·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1의2. 삭제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의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경우 중 1회용 종이쇼핑백과 생선 · 정육 ·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 봉투 ·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6. 제4호 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 · 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 · 군 · 구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 · 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7. 제5호의 경우중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다. 삭제

8. 삭제 〈2004.12.10〉

9.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신 · 구조문 대비

<table>
<tr><th colspan="4">현 행</th><th colspan="3">개 정 안</th><th>개정이유</th></tr>
<tr><td colspan="4">〔별표2〕
업종별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추진사항(제4조 관련)</td><td colspan="3">〔별표2〕
업종별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추진사항(제4조 관련)</td><td rowspan="3"></td></tr>
<tr><td>업 종</td><td>준 수 사 항</td><td>적용대상 1회용품</td><td></td><td>업 종</td><td>준 수 사 항</td><td>적용대상 1회용품</td></tr>
<tr><td colspan="4">1.~4. (생략)</td><td colspan="3">1.~4. (현행과 같음)</td></tr>
</table>

제 · 개정 이유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5.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 매제조가공업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분리 · 수거 하면 재활용이 용이하며,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가.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나. 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 한다)	나. (삭제)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비 고	비 고	
1. (생략) 1의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그 용기는 비고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 이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생략) 7.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경우 8.~9.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삭제) 2.~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 8.~9. (현행과 같음)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